

7. 地方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033號 1990. 6. 29 公布.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대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방송법에 의한 신문·통신 또는 방송사업자가 보도·취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

제74조제1항중 “20일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2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으로 하고, 동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제79조의12 제1항중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를 포함한다”를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4조의3 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골프장

회원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제84조의4 제1항중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을 “공장용 부지는 2년”으로 한다.

제84조의4 제3항중 제1호(2)중 “100분의 5”를 “100분의 7”로 한다.

제84조의4 제4항제1호 본문중 “토지”를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로 하고, 동항 제2호 단서중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2년 6월)”을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로 하며, 동항 제12호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6조제6호중 “대한교육연합회”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8호중 “시장”을 “도·소매업”으로 한다.

제104조중 “법 제132조제1항제4호”를 “법 제13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24조의2 제4호중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중 “지상정착물을 말한다”를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로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제2호에 (2) 내지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 (3)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5)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의 경내지인 농지
- (6) 중중이 소유하는 농지

제194조의15 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제3호 전단중 “1구의 주택”을 “1구의 주택(내무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2호(4) 내지 (6)과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199조의2 제1항제5호중 “유흥음식점 및 전문음식점 영업용건축물”을 “유흥接客업 영업용건축물(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2종의 제80호중 “조경공사업·전기공사업”을 “조경공사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의 제53호중 “감정사·토지평가사·측량사·사법서사”를 “감정평가사·측량사·법무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4 제3항제1호(2) 및 제84조의4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 3·제194조의14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도세징수교부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도세징수 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改正理由 ▷

不動産投機抑制를 위하여 取得稅의 重課稅 對象인 法人의 非業務用 土地의 범위를 확대하고, 綜合土地稅의 施行에 따라 豫想되는 問題點을 補完하며, 기타 現行 規定의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 가. 市·郡에 대한 道稅徵收交付率은 現行 30퍼센트(特別市 및 直轄市의 區에 대한 交付率은 3퍼센트)이나, 市·郡·區의 委任事務 등이 增加함에 따라 特別市 및 直轄市의 區와 人口 50萬 이상 市에 대한 徵收交付率은 이를 초과하여 內務部令으로 定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
- 나. 大韓住宅公社가 취득하는 永久賃貸住宅團地 안의 福利施設에 대하여는 그 福利施設의 收入金額을 모두 賃貸住宅管理費로 充당하는 경우 取得稅 등을 免除하도록 함(令 第79條의12).
- 다. 取得稅의 重課對象인 골프場의 범위를 會員制 골프場用 不動産으로서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關한 法律施行令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對象이 되는 모든 土地 및 建築物로 함(令 第84條의3 第1項).
- 라. 不動産賣買業을 主業으로 하는 法人의 賣買用土地는 취득후 3年間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年間으로 短縮하여 取得稅를 重課稅하도록 함(令 第84條의4 第3項 第1項).
- 마. 賃貸用土地는 年間 賃貸收入金額이 當해 土地價額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에서 제외하였으나, 年間 賃貸收入金額이 土地價額의 7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上向 調整함(令 第84條의4 第3項 第1號).
- 바. 金融機關의 債權保全用土地는 취득후 2年 6月간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年으로 短縮하고 成業公社에 賣却을 委任하는 경우와 農地 및 農家住宅의 경우에는 증전과 같이 2年 6月간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84條의4 第4項第2號).

사. 다른 法令에서 不動產 所有를 固有業務로 規定하고 있는 法人이 그 法令에서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保有하는 土地인 경우에도 이를 法人의 非業務用土地로 보도록 함(令 第84條의4 第4項第12號 削除).

아. 建築중인 建築物의 敷地는 이를 建築物이 있는 土地로 보아, 工場建築物을 新築중인 土地는 分離課稅對象으로 하고 營業用建築物을 新築중인 土地는 別途合算課稅對象으로 함(令 第194條의14 第1項 및 第194條의15 第1項第1號).

자. 營農組合法人 所有農地, 農漁村振興公社의 供給用農地, 社會福祉施設의 所有農地, 宗中所有農地, 寺刹의 境內地인 農地는 綜合土地稅 綜合合算課稅對象에서 分離課稅對象으로 함(令 第194條의15 第1項第2號).

〈법제처 제공〉